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3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제안이유

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명칭변경, 직제순에 따른 내용 수정 및 기금(일몰제도)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관 명칭변경

○ 주민생활지원과장 → 주민복지실장으로 기금운용관 명칭변경

나. 직제순에 따른 내용 수정

○ 총무과장, 재무과장, 주민생활지원과장, 보건소장(당연 임명직) → 주민복지실장, 총무과장, 재무과장, 보건소장(당연 임명직)

다.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.

○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.(안 제5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노인복지법』 제4조,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』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2013. 11. 05 ~ 11. 24(의견없음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

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주민복지실장, 총무과장, 재무과장, 보건소장(당연 임명직)

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복지실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생 략)	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④ ----------.
1. 총무과장, 재무과장, 주민생활지원과장, 보건소장(당연 임명직)	1. 주민복지실장, 총무과장, 재무과장, 보건소장(당연 임명직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・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	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-----.
1. 기금운용관 : 주민생활지원과장	1. ---------- 주민복지실장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